

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동 개정조례안은 2003. 1. 28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, 2003. 1.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개정이유

- 「교육행정정보시스템」의 조기 안정화와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보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총 정원 증원 : 8명(7,324명 → 7,332명)
- 금회 증원되는 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.

4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교육행정정보시스템」의 조기 안정화와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보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안됨.
- 이번 개정안은 「교육행정정보시스템」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2.12.2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8명의 한시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.
-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 따라서 이번에 증원되는 8명의 한시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승인된 내용이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사항임.
-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8명을 반영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수는 현행 총 7,324명에서 7,332명으로 늘어남.
※ 이번에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관은 2003.1.1~2004.12.31까지 2년간임.

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7,324명”을 “7,332명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2호중 “7,306명”을 “7,314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)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원 8명(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인력)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

교육청 주요업무계획

I. 일반현황

조 직

- 본 청 : 1실 2국 5담당관 9과 1추진단
- 지역교육청 : 11개청